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4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4월 1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종전의 「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2조)
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
- 위원회 기능(안 제3조)
 -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 -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
□ 의안전문 : 불임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련법령 발췌 : 불임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종전의 「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● 지방재정법

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 2.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 3.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
 4. 채권관리현황
 5. 기금운용현황
 6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 7.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
 8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●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68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공통공시”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특수공시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
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제69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·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.

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공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1조(재정운용상황의 보고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2조(공시에 대한 조치 등)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

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·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,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.